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26호 2014년 7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두사
연구원소식
최신건설정보
발간물안내



미래 건설의 가치는 풍요롭고 안전한 인간의 삶



반갑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 회장 김 병 철입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전문 건설인들의 창조적 미래 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시점입니다.

국내 전문건설 업계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전문기술인력 부족과 생산원가 상승 등의 삼중고로 말미암아 마치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는 쪽배처럼 매우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초고속 압축 성장의 첨병 역할을 해 왔던 저력과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시대를 뒤로 한 채, 최근 너무도 빠져진 희생을 치러 가며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며 발전해 왔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원하고, 건설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실용적 연구를 주도하며, 정책당국을 리드할 수준의 선제적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미래 건설의 가치는 높은 부가가치와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 동안 건설업계의 두뇌 역할을 충실히 해온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속성장과 신재생에너지, ICT 및 RoT 기술 기반의 융합기술 개발, 신소재 개발 및 국가 건설정책 연구에 핵심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보증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TF팀 구성

- 우리 연구원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공동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보증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동 TF는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정책 등에 맞춰 조합의 특성에 맞는 보증리스크를 측정하고 이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건설관련 공제조합 관리기준 고시 분석, 바젤II의 신용리스크관리기법 벤치마킹, 보증상품 리스크 구조분석, 보증리스크의 산출을 위한 부도율(PD)도출, 보증리스크 관리체계 관련 후속과제 제안 등이 주요 연구 내용이다.
- 동 TF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유일한 연구위원 박선구, 책임연구원 김태준, 선임연구원 조명수 연구원이, 조합 리스크관리팀에서 최대웅 팀장, 김근환 차장, 유여송 대리가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14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연구용역 계약 체결

- 지난 7월 14일, 우리 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2014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동 보고서는 매년 기업경영, 공사계약, 자금조달 등 여러 측면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영과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동 연구용역을 수행해왔으며 금년에는 이보라 연구위원과 이은형 책임연구원이 맡아 오는 10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맞춤형 물산업 해외진출 방안 연구용역' 종료 및 연구성과물 제출

- 지난 7월 3일, 우리 연구원은 '맞춤형 물산업 해외진출방안 연구용역' 과제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 동 과제는 국가별 또는 대륙별 물산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도출, 첨단기술(IT기술 등) 기반의 물산업 고부가가치화, 전문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침투와 현지화전략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2013년 10월부터 수행되었다.
- 이번 연구는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위원과의 업무협약(연구 및 업무분야의 협력체계 구축) 첫 단계로 이루어진 공동연구라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건설시장의 확대, 전문건설업의 선진화, 수자원 분야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수행 등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8차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 참석

-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은 지난 7월 24일, 서울시신청사에서 열린 ‘제8차 서울특별시 하도급개선협의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 동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적정공사비 지원을 통한 건설주체간 상생발전 마련, 실적공사비 적용제도 폐지, 분리발주 대상공사 공종별 확대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초고층 건축물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참석

- 우리 연구원의 유일한 연구위원은 지난 7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최한 2014 단기실현기술 ‘초고층 건축물’ 기술영향평가위원회에 참석했다.
- 동 위원회는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정의와 이슈 및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의견지시 및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에는 ‘초고층 건축물’과 ‘무인이동체’를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2014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심사위원회’ 참석

- 우리 연구원의 조명수 연구위원은 지난 7월 17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4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이 날의 회의에서는 정부포상 심사(안)의 심의 및 의결, 추천대상자 심사와 확정 등이 이루어졌다.

‘경기도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참석

- 우리 연구원의 이보라 연구위원은 지난 6월 26일, 경기도청(본청)에서 열린 ‘경기도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동 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의 특성과 하도급법의 핵심규제사항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동 제도는 해외건설 수주액의 급증과 더불어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체들의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시정하고 중소기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 동 계약서는 국내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부당감액,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위탁취소행위, 기술유용행위)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우리 연구원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계약현황 분석 및 해외건설 하도급계약 관련 국내 소프트웨어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안’ 과제를 수행하며 해외건설공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통한 불공정행위 차단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38개 조항으로 구성된 동 계약서는 계약서의 작성과 이행 등과 관련해 준수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하도급법 준수 원칙)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
 - ② (현지법인 설립 강요 금지) 발주자의 요구나 현지법의 규정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 못함
 - ③ (과도한 보증요구 및 보증기관 지정금지)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적용, 원사업자의 특정 보증기관 지정불가
 - ④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선급금 정산방식 적용 허용)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
 - ⑤ (분쟁해결기관 추가) 분쟁조정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





건설정책리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장비대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발급비용을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보증금액은 4개월분의 건설장비 계약금액이다. 또한 건설기계별 구분없이 건당 2백만원을 초과하는 대여계약이라면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그간 시행된 동 제도의 이행현황을 검토한 뒤 전문건설업체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의 저해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① (상호보증 의무화) 건설업자(대여대금 지급보증)와 기계대여업자(계약이행보증)간의 형평성 제고
- ② (보증기간 축소) 현행 4개월의 보증기간을 2개월로 변경
- ③ (보증면제 금액 상향) 현행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변경
- ④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활성화) 관련 절차와 요건 완화
- ⑤ (보증수수료의 적정한 원가반영) 보증수수료의 원활한 지급
- ⑥ (보증기관의 행정업무 간소화) 보증절차 간소 및 수수료 인하(우량기업)